

2항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일비의 1/2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여비정액은 본 條例案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개정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5조제3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별표 3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현지교통비 1일당 6,500원을 일비 1일당 1만원으로 조정하고, 숙박비 1야당 3만 7,500원을 숙박료 1야당 4만 1,000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 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동란의 제4호 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개정하여 중앙정부 직제에 맞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運營委員會에서 제안설명한 서울特別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의회회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회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여비정액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6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와 별표7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대

통령인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와 별표2 여비정액표, 국외여비규정 별표1 항공임정액표와 별표2 일비·숙박비·식비액표 및 별표3 준비금 지급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별표 3중 국내여비지급표의 현지교통비(1일당 6,500원) 및 숙박비(1야당 37,500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일 비 (1일당)	숙 박 료 (1야당)
의장·부의장	10,000	41,000
의 원	10,000	41,000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란의 제4호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서울特別市長·教育監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
件(柳德烈議員 外 14人 發議)

(16時 15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長·教育監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본 안건은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 서울市政 및 教育行政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特別市長과 教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을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運營委員會 趙相勳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相勳議員 안녕하십니까? 運營委員會 趙相勳議員입니다.

제92회 임시회에 있어서 서울特別市長·教育監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우리 市議會 議員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관계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地方自治法 제37조와 서울特別市議會에出席하여答辯할수있는關係公務員등의範圍에關한條例 제